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7층이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허용 건축물이 정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운영상 일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물의 층수관리 방안을 신설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층 이하 지역을 지정·고시토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7호).

다.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주변의 교통·경관·일조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지역보다 완화 하고자 함(안 제79조의 2, 안 제84조제1항).

라. 구·군간 불균형 개발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시 민간사업자가 원할 경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변경·추가부담 요구 등이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3조제3항 내지 제4항).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비되고 추가로 허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제113조, 동법시행령 제71조·제84조·제85조 및 제114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제52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30조,「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5. 10 ~ 5. 30) 결과

◦ 의견접수 40건(반영 18건, 미반영 22건)

◦ 제출의견 요약

의 견 요 지	반 영 여 부	제 출 자
· 정비사업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 15층 이하를 평균층수 15층 이하로 변경(18건)	반 영	건축주택팀장,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외 16
· 정비사업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 15층 이하를 평균층수 15층 이하, 최고층수 19층 이하로 변경(5건)	미반영	전제원외 4
·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12층 이하를 평균층수 15층 이상으로 변경(3건)	〃	이상무외 2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 폐지(5건)	〃	김대곤외 4

의 견 요 지	반 영 여 부	제 출 자
· 준주거지역안에서 대형마트 건축제한 반대(1건)	미반영	김진관
· 기타사항(8건) - 용도지역 변경 요구 (수성구 범어2동 427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달서구 죽전동 일원 7층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오세영 고도윤
- 평균층수 산정시 1층 전체가 피로티인 경우에는 층수에서 제외	〃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건폐율·용적률 특례조항에서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삭제		
-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 용적률 완화시 위원회 심의 절차(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삭제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대책 요구	〃	권향숙
- 정비예정구역안에서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종 상향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허용건축물 완화 허용(2건)	〃	이응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조(자문단 등)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전에 자문단(자문단을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 및 자문단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 구청장·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7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해당 구·군의 게시판을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용도지구

제11조(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자체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 배후의 주변 시가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구
3. 제1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소 등 수변경관을 적극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제2종수변(水邊)경관지구 : 하천·호소 등 수변지역의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전통경관지구 :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제12조(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 구·군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지방재정법」, 시, 구·군의「공유재산관리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대구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 관리청(재산관리관)이 관리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절차이행 등)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의 결정·통지 및 매수 등의 절차 이행은 제1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가 행한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는 지역
2.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 중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개설이 완료된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街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사도가 30퍼센트 이하인 토지(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45퍼센트 이하)

2. 입목본수도가 40퍼센트 이하인 토지(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50퍼센트 이하)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의 조사·산출은 별표 1의 방법에 따른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창고 등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농림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 또는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 및 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라목(1) (가)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및 침출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 및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3.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허가기준 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에 6월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 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4 제1호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마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4조(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 5 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층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공원·녹지·하천 등 경관의 보전, 시가지내 공기흐름의 유지, 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등을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과「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5층 이하

나.「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 시시장정비사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평균층수를 15층 이하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를 12층 이하로 하되, 최고층수를 15층 이하

② 제1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층수는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기준면적(동별 아파트의 지상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를 말한다(한 동에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하고, 상가 및 피로티는 층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평균층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9. 제33조제9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

소·도료류 판매소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6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동·식물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라목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제33조제9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그 외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읍·면지역 외의 지역은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동호아목 및 자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동호가목·차목 및 카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동호나목 및 파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제3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및 도료류 판매소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1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2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2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3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나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가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44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5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 및 도계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

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시지역 안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7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및 고등학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

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연구시설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8조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5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절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1조(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2조(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3조(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4조(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5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7조(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또는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또는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건축물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붕의 모양이 경사지붕 또는 곡면지붕으로서 처마선 에서부터 지붕까지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및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및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및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및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및 12미터 이하

제59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또는 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그 외의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1조(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허가권자는 미관지구가 공업지역 안에 지정된 경우 공장·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2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건축법」제3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및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63조(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 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 이상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군사시설보호법」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전기설비기술기준」제91조에 따른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4.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기념관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6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 및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회당·회의장·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하는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68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및「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절 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69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0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는「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8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72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허가권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제73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74조(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제6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7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76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7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78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른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9조의2(건폐율의 특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3.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4.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8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다만, 공동주택은 250퍼센트 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천 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 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따른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다.

제81조(기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8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영 제8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0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83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 각 호의 지역·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해당 용적률

제84조(용적률의 특례)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의 경우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비계획공동위원회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15퍼센트까지 가산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7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제85조(재공고·공람사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6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완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등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제87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제88조(구성) ①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계있는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계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운영)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1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1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2 (간사 및 서기) 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3조(자료제출 및 설명) ① 시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회의의 비공개) 시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95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6개월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 및 영 제113조의2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6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9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98조(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간사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이 선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99조(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④ 간사위원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제100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및「대구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102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는 제11조제1호에 따른 제1종자연경관지구로 세분·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 미관광장은 일반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리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 27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9. 제49조제9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이하 및 8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50퍼센트 및 1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조례 제3440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도시계획과란 중 일련번호 제1호와 제3호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20조제3호 관련)

□ 경사도 조사방법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되게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안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내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밖에 측정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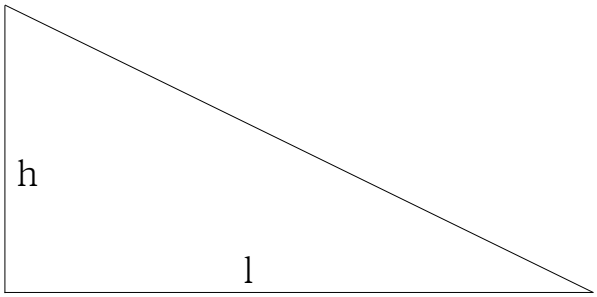

$$\text{경사도 } d\ (\%) = \left(\frac{h}{l} \right) \times 100$$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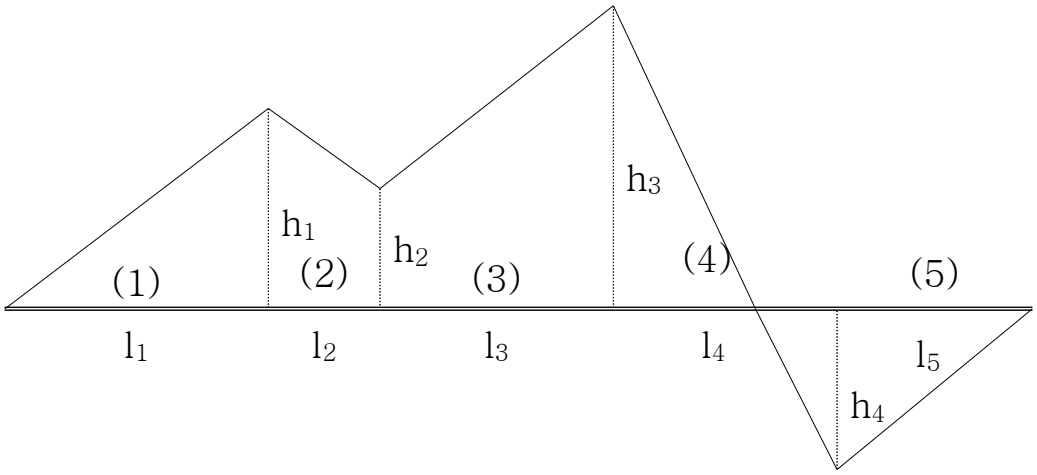

구간	평면거리	고저차	구간별 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l_1	h_1	$d_1 = \left(\frac{h_1}{l_1} \right) \times 100$	$d_1 l_1$
(2)	l_2	$h_1 - h_2$	$d_2 = \left(\frac{h_1 - h_2}{l_2} \right) \times 100$	$d_2 l_2$
(3)	l_3	$h_3 - h_2$	$d_3 = \left(\frac{h_3 - h_2}{l_3} \right) \times 100$	$d_3 l_3$
(4)	l_4	$h_3 + h_4$	$d_4 = \left(\frac{h_3 + h_4}{l_4} \right) \times 100$	$d_4 l_4$
(5)	l_5	h_4	$d_5 = \left(\frac{h_4}{l_5} \right) \times 100$	$d_5 l_5$

전체 경사도 d (%) = $\frac{d_1l_1 + d_2l_2 + d_3l_3 + d_4l_4 + d_5l_5}{l_1 + l_2 + l_3 + l_4 + l_5}$

$= \frac{\Sigma d_i l_i}{\Sigma l_i}$

d_i : i 구간 경사도

l_i : i 구간 평면거리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여 위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 단면 경사도

$$d_A\,(\%) = \frac{\Sigma d_{Ai} l_{Ai}}{\Sigma l_{Ai}}$$

B 단면 경사도

$$d_B\,(\%) = \frac{\Sigma d_{Bi} l_{Bi}}{\Sigma l_{Bi}}$$

d_{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d_{Bi} : B단면의 i구간 경사도

l_{Ai} : A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l_{Bi} : B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전체 경사도 d (%) = Max(d_A, d_B, d_C, …)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 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⑴ 조사야장 양식

가슴높이직경(㎝)	계	측정본수	비 고
총계			

⑵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⑶ 기재요령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②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⑷ 가슴높이직경 측정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상 1.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③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⑸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③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대상지면적(㎡)×정상입목본수(본/㎡)

⑤ 입목본수도(%) = $\frac{\text{대상지 현재 생육본수}}{\text{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times 100$

3. 입목본수 기준표

가슴높이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가슴높이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가슴높이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	(본)	(㎝)	(본)	(㎝)	(본)
3 미만	3,000	15 이상 17 미만	820	29 이상 31 미만	390
3 이상 5 미만	2,350	17 이상 19 미만	730	31 이상 33 미만	360
5 이상 7 미만	2,040	19 이상 21 미만	630	33 이상 35 미만	330
7 이상 9 미만	1,740	21 이상 23 미만	570	35 이상 37 미만	300
9 이상 11 미만	1,400	23 이상 25 미만	510	37 이상 39 미만	280
11 이상 13 미만	1,150	25 이상 27 미만	470	39 이상 41 미만	260
13 이상 15 미만	980	27 이상 29 미만	430	41 이상	240

[예시]

■ 입목조사야장

조사일시

조 사 자 (직) (성명)

가슴높이직경(㎝)	계	본 수	비 고
07 이상 09 미만	25	正正正正正	
09 이상 11 미만	21	正正正正-	
11 이상 13 미만	15	正正正	
13 이상 15 미만	6	正-	
15 이상 17 미만	1	-	
17 이상 19 미만	1	-	
총 계	69		

■ 입목본수도 산출

구 분 \ 평균직경	총계	8㎝	10㎝	12㎝	14㎝	16㎝	18㎝
본 수	69	25	21	15	6	1	1
직경소계	708	200	210	180	84	16	18

○ 대상지 면적 : 1,000㎡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 ÷ 69본 = 10.3㎝
○ 10㎝, 1ha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별표 2]

상업지역안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80조제3항 관련)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60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690 이하	560 이하	45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780 이하	620 이하	5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870 이하	680 이하	55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960 이하	740 이하	60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1,050 이하	800 이하	65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140 이하	860 이하	700 이하
10 이상 ~ 20 미만	1,220 이하	930 이하	750 이하
10 미만	1,300 이하	1,000 이하	800 이하

[별표 3]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다음 페이지에 계속)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다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입안의 제안서 처리,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다만, 시장이 입안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도로(다만,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한한다) (2) 주차장 (3) 궤도 (4) 삭도 (5)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6) 광장(다만, 교통광장은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한다) (7) 공원(다만, 생활권 공원중 근린공원, 주제공원 중 묘지공원, 체육공원은 제외한다) (8) 녹지 (9) 공공공지 (10) 수도공급설비(다만, 배수시설에 한한다) (11) 열공급설비 (12) 시장(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은 제외한다) (13) 학교(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제외한다) (14) 공공청사(다만, 시 관련청사는 제외한다) (15) 문화시설 (16) 체육시설(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17) 도서관 (18) 연구시설 (19) 사회복지시설 (20) 공공직업훈련시설 (21) 청소년수련시설 (22) 하천(다만,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은 제외한다) (23) 저수지(다만, 농업용수 및 홍수조절을 위한 저수지에 한한다) (24) 방화설비 (25) 방풍설비 (26) 방수설비 (27) 사방설비 (28) 납골시설 (29) 장례식장 (30) 종합의료시설 (31) 하수도(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32) 폐기물처리시설(다만, 중간처리시설에 한한다) (33) 수질오염방지시설 (34) 폐차장 (3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법 제24조 내지 제28조 및 조례 제8조 내지 제10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6) 용도지역·용도지구(입안 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주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동일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에 한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과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영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과 준공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외)을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37) 집단취락지구	
(38) 방재지구	
(39) 숙박시설제한지구	
(40) 위락시설제한지구	
(4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42) 리모델링지구	
(4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	
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과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영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과 준공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제외)을 제외한 입안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법 제29·제30조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법 제32조
(3)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법 제33조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	법 제34조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법 제85조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지정	법 제86조
(3)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법 제88조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법 제89조
(5) 서류의 열람 등	법 제90조
(6)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91조
(7)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	법 제92조
(8) 공사 완료공고	법 제98조
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43조 및 조례 제13조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마.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47조 및 조례 제14조·제15조
바.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다만, 결정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48조
사. 토지에의 출입	법 제130조
아.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과 손실보상(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133조
자. 청문(다만,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권한이 위임된 시설에 한한다)	법 제136조
차.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보고 및 검사	법 제137조
2.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행위의 허가 나. 준공검사 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라.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마. 개발밀도관리구역 바. 삭제	법 제56조·제62조 내지 제64조 및 조례 제19조 내지 제30조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의 경우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농림지역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자연환경보전·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제77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에 한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

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에 의한다.

제7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7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7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제77조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

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9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8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삭제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5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

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7]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 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 자목 및 별표 20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

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